

제263회 영등포구의회 임시회

「서울특별시 영등포구 학교체육시설 개방 지원 조례안」

검 토 보 고 서

【김지연 의원 발의】



2025. 8. 26.

행 정 위 원 회
전 문 위 원

「서울특별시 영등포구 학교체육시설 개방 지원 조례안」

검 토 보 고 서

1. 경 과

의안 제569호로 2025년 8월 14일 김지연 의원 외 3명으로부터 발의되어 2025년 8월 21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됨.

2. 제안이유

- 가. 지역주민의 건강 증진과 생활체육 활성화에 대한 수요가 증가함에 따라, 지역사회에서 활용 가능한 체육 인프라의 확보가 강하게 요구되고 있음.
- 나. 그러나 공공체육시설의 절대적 부족과 신규 시설 확충의 어려움으로 인해, 기존 자원을 활용하는 대안으로 학교체육시설의 개방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음.
- 다. 이에 따라, 영등포구 내 학교체육시설을 지역주민에게 개방하고, 이를 체계적이고 지속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행정적·재정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본 조례를 제정하고자 함.

3. 주요내용

- 가. 조례의 목적 및 정의 (안 제1조~제2조)
- 나. 구청장의 책무 및 지원계획 수립·시행 (안 제3조~제4조)
- 다. 행정·재정적 지원 근거 마련 (안 제5조)
- 라. 사용내역 보고 및 현장검사 규정 (안 제6조)
- 마. 협약 체결 및 이용자 의무사항 명시 (안 제7조~제8조)

4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: 「국민체육진흥법」, 「생활체육진흥법」 등

나. 예산조치: 협의필요

다. 입법예고(2025.8.14.~2025.8.21.) 결과: 의견 없음

5. 검토의견

○ 조례 제정 배경 및 취지

- 2024년 문화체육관광부가 실시한 국민생활체육조사 결과¹⁾ 생활 체육 참여율은 최근 3년 동안 60% 이상으로 나타났으며 이들의 체육시설 이용률을 살펴보면 공공체육시설은 33.7%, 민간체육시설은 20.1%, 기타체육시설은 7%이며 학교체육 시설은 6.2%에 그치는 것을 알 수 있으며, 32.9%는 자가 시설, 직장체육시설을 이용하거나 이용하지 않는다고 답변함.
- 주민들의 건강, 체력 증진을 위한 체육시설의 수요가 크게 늘어나는 추세이나 공공체육시설의 건립은 예산 및 부지 제약 등의 사유로 수요를 따라가지 못하는 것이 현실임. 따라서 기존 자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하는 방안으로 학교 체육시설을 개방하여 공공 자원 활용도를 높여 행정 효율성을 제고하고 생활 체육 활성화를 통해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하고자 본 조례안이 발의됨.

1) 출처: 2024년 국민생활체육조사 결과

- 조사 기준 기간: 2023.9.~2024.8.

- 조사 기간: 2024.9.~2024.11.

- 조사대상: 2024년 기준 대한민국 내 만 10세이상 국민 9,000명

○ 주요 내용에 대한 검토

- 동 조례안은 안 제1조부터 안 제3조까지 목적, 정의, 구청장의 책무를 규정하고 있으며 지원계획, 지원사업, 협약 체결 등에 관한 사항을 담아 총 9개의 조문으로 구성되어 있음.

조	제 명	내 용
제1조	목적	조례 제정 목적 명시
제2조	정의	학교, 학교체육시설의 정의
제3조	구청장의 책무	학교체육시설의 개방 활성화를 위한 시책 마련
제4조	지원계획 수립·시행	지원계획 수립·시행 - 개방 지원 목적 - 개방 지원 대상 범위 - 개방 지원을 위한 세부 실행계획 등
제5조	지원사업	행정적, 재정적 지원 가능 - 관리 및 유지보수 지원사업 - 관리 인력 지원사업 - CCTV 등 학교 안전시설 설치 지원사업 등
제6조	보고 및 검사	학교: 재정 지원 사용내역 제출 의무 구청: 재정적 지원에 관한 서류 등 검사 - 검사 결과에 따라 전부 또는 일부 반환 가능
제7조	협약 체결	개방시간, 상호협력 등 포함된 협약 체결 가능
제8조	이용자 의무 및 책임	안전사고 및 화재예방을 위해 이용자로서의 주의 의무
제9조	표창	개방 활성화 기여 공적으로 표창 가능

○ 종합의견

- 「국민체육진흥법」 제3조²⁾와 「생활체육진흥법」 제5조³⁾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가 국민체육 및 생활체육 진흥을 위해 육성 및

2) 제3조(체육 진흥 시책과 권장)

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민체육 진흥에 관한 시책을 마련하고 국민의 자발적인 체육 활동을 권장·보호 및 육성하여야 한다.

3) 제5조(국가 등의 책무)

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생활체육의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·시행하여야 한다.

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책무를 다하기 위하여 이에 수반되는 예산상의 조치를 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.

시책 추진 의무를 가지며 「생활체육진흥법」 제5조제2항에서는 이를 위한 예산상 조치를 취할 수 있음을 규정하고 있으므로 본 조례 제정의 필요성이 인정되며,

- 공공체육시설 확충의 어려움을 보완하고 구민의 건강 증진 및 생활체육 활성화를 도모하는 데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.
- 2025년 5월 학교알리미 공시자료 기준, 우리 구(區) 관내 초·중·고등학교 중 운동장을 개방하고 있는 학교는 31곳, 체육관을 개방하고 있는 학교는 14곳, 강당을 개방하고 있는 학교는 5곳임. 다음과 같이 이미 조성된 인프라를 활용하여 주민 생활권 근거리에 무료 또는 저렴하게 이용할 수 있는 체육시설을 확보하는 것은 주민들의 생활 체육 참여도를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며, 개방한 학교에 지원가능한 사업을 명문화한 것은 추후 학교 체육시설의 지역사회 개방 유도에 도움이 될 것으로 사료됨.
- 또한 시설의 유지보수나 CCTV 설치 등 학교 안전시설 설치 지원사업(안 제5조)이 단발성 설치 지원에 그치지 않기 위하여 사용내역 보고(안 제6조) 및 협약 체결(안 제7조) 규정을 둔 것은 지속적 유지관리 및 안정적 지원 체계 마련을 도모한 것으로 여겨짐.
- 다만, 학교 체육 시설 개방 시 학생들의 안전 및 교육활동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소관부서에서는 주의를 기울여야 할 것임.

참 고 자 료

1

국민체육진흥법

제3조(체육 진흥 시책과 권장)

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민체육 진흥에 관한 시책을 마련하고 국민의 자발적인 체육 활동을 권장·보호 및 육성하여야 한다.

2

생활체육진흥법

제5조(국가 등의 책무)

-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생활체육의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·시행하여야 한다.
-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책무를 다하기 위하여 이에 수반되는 예산상의 조치를 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.